

## 감리지적 사례 FSS/1912-22 : 수익인식 오류

- 쟁점분야 : 수익인식 시기 변경
- 관련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 결정일 : 2019년
- 회계결산일 : 2016.12.31.

###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해외 종속회사와 재화의 매출거래에 있어 X1년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위탁제품이 해외에서 최종 거래처에 판매되는 시점에 회사의 매출로 인식하고, 미판매 분은 매 기말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왔다. 그러던 중 회사는 X6년 12월 기말에 X1년 체결한 동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하고 해외 종속회사에서 과거부터 보관중이던 장기 미판매 위탁제품을 종속회사가 인수하도록 하여 기말일자로 일시에 15억원의 매출과 1억원의 매출원가로 인식하여 14억원의 당기이익을 계상하였다.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종속회사와의 위탁판매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변경이 없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낮은 장기 미판매 되고 있던 위탁재고를 종속회사가 계약의 해지에 동의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위탁매출에서 인도매출로 보고 재화의 수익 인식시기를 일시에 변경하였고 이에 매출 15억원 및 관련 매출원가 1억원이 과대계상되어 총 14억원의 당기손익을 과대계상함

###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10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인식할 수 있다.
- ② 상기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A사의 수익인식 시기의 변경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수익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①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입증절차부터 수집된 감사증거가 내부통제의 시사에서 수집한 증거와 더불어 경영자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지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X6년 보고기간말 시점에 해외종속회사로의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해외종속회사가 위탁매출계약 해지에 동의하였고 향후 관련 재고자산이 해외에서 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회사의 말을 신뢰하여 양사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수익인식기준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 5. 시사점

특수관계자는 특수관계가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래를 성사시킬 수도 있다. 이에 특수관계자 간의 매출 거래에 있어 계약서 등의 법적 형식은 갖추어져 있으나 경제적 실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거나 수익인식기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거래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수익인식시기 변경 등과 같은 방식으로 당기손익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